



**선진국과 개도국은 지구환경보전을  
위해 협력한다는 기본원칙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보전의 책임과  
구체적 이행을 위해 필요한 재정부담 및  
기술이전과 관련하여서는 상당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다**

99

그리고 우리의 정책적 대응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구환경문제가 최근 급속히 부각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환경문제는 일반적으로 국지적인 환경문제와 광역적인 환경문제로 구분될 수 있으며 세계적으로 70년대 중반까지의 환경문제는 주로 국내문제로 인식되어 국내차원에서 그 해결책이 모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70년대 이후 대기오염물질의 국가간 이동에 따른 피해가 속출하고, 오존층파괴, 기후변화 등에 따른 피해현황이 조사보고되면서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대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이 광범위하게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최근의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은 가히 폭발적일 정도로, 올해의 경우에도 마흔번 이상의 지구환경관련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와같이 지구환경문제가 근래 세계적으로 관심을 끌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이 몇가지로 대별하여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개발의 시대라는 평가를 받았던 '60년대를 지나면서 누적되기 시작한 각종환경문제가 자연이 수용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기 시작하면서 지구적 규모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세계는 '72년 스톡홀름에서 『유엔인간환경회의』(UNCHE)를 개최하여 지구환경 논의의 기본현장이라 할 수 있는 『유엔인간환경선언』을 채택하였고 '73년에는 『유엔환경계획』(UNEP)을 설립하여 국제환경문제에 관한 협의를 본격화하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과학기술의 발전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오존층의 파괴가 염화불화탄소(CFC)에 의한 것임을 밝혀낸 것이나 기후의 온난화가 이산화탄

소, 메탄 등의 온실가스에 의해 유발됨을 알아낸 것은 모두 컴퓨터의 발달, 관측기술의 진보 등 과학의 발전에 힘입은 바 크며 이와같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미래의 예측능력이 증가하여 위기에 처한 지구의 현 상황을 빠르게 인식할 수 있게 된 것이 그 두번째 이유라 생각됩니다.

세번째로 비교적 최근의 일이지만 동서간 대결의 구도였던 냉전시대에서 새로운 대체이념으로서 지구환경문제가 제기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985년에 집권한 소련의 고르바초프는 개혁과 개발정책을 주도하면서 이제는 이념의 대립을 넘어 환경문제 등 지구공동의 생존을 위한 노력이 시작되어야 함을 역설하며 그를 위해 국가나 계급의 이익보다 전지구의 이익(Global Benefit)을 앞세워야 한다고 천명한 이후 지구환경문제는 체계를 초월하는 세계공동의 문제라는 합의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외에도 민간환경단체의 활발한 활동도 환경의식의 확산에 크게 기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이나 『세계야생보전기금』(WWF) 그리고 최근 러시아의 동해 핵폐기물 투기 적발로 국내외적으로 크게 알려진 『그린피스』 등의 환경단체는 그들의 열성적 노력으로 대중들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생물다양성협약』 등 많은 국제협약을 채택케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와같은 이유로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불러



등 23개 협약에 가입하였으며,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통계에 관한 『바젤협약』, 『폐기물 및 폐기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협약』(런던협약),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에의 가입을 준비하고 있는 등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주요 국제환경협약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발표에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와같은 환경보호를 위한 100여개의 국제협약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구환경보호 문제가 국제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저도 국회대표단의 일원으로 참가한 바 있는 '92년 6월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로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리우선언'과 그 실천계획인 '의제21'이 채택되었고 각국의 '의제21' 이행상황을 감시하기 위하여 유엔경제사회이사회 산하로 '지속개발위원회(CSD)'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결과만 본다면 국제적으로 지구환경보호를 위한 커다란 진전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리우선언의 채택을 위한 협상에서 드러났듯이 선진국과 개도국은 지구환경보전을 위해 협력한다는 기본원칙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보전의 책임과 구체적 이행을 위해 필요한 재정부담 및 기술이전과 관련하여서는 상당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개도국들은 현재의 지구환경과 과거 산업혁명 이래 계속 되어온 선진국의 과도한 산업개발에 역사적 책임이 있다고 보고 선진국이 지구환경보전에 필요한 재원과 기술을 개도국에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주장은 리우선언에 나타난 '차별적인 공동책임' 개념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들 국가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선진국의 환경을 이유로 한 무역규제 강화가 개도국 경제발전에 새로운 제약요소로서 개도국과 선진국의 수출상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서는 안되며 "지구환경보전"이 선진국 민간기업들의 독점적 이윤추구의 기회로 이용되어서도 안됨을 강조하면서 선진국들이 오염자부담원칙에 의거, 새롭고, 충분하고, 추가적인 재정지원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지원이외에 개도국이 선진국에게 요구하는 것은 기술 이전문제입니다. 이에 대해 선진국들은 이전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기술 이전보다는 민간기업간의 기술협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술이전이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환경청기술 분야로 개도국은 지구환경보전을 위하여서는 환경청정기술이 필요한 모든 수혜자에게 보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민간기업의 지적소유권을 강조하고 있는 선진국들도 지구환경보전을 위하여 어느 정도의 재정지원과 기술협력이 이루어져야 함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열린 기후변화협약과 생물다양성협약의 후속회의에서도 개도국들은 선진국과는 달리 생존에 필요한 개발의 강화가 환경보호와 직결된다고 주장하며 협약에 의한 개도국 지원이 단순히 협약상의 조치를 이행하는 것에만 한정하지 말고 포괄적이고 충분한 지원을 요구한 반면, 선진국들은 재정지원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기준을 엄격히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해 양자간에 상당한 견해차를 나타내었습니다.



**지구환경과 국가간 무역이 연계되어  
논의되는 것은 자유무역이  
지구환경보호에 끼친 악영향 이외에도  
최근의 국제환경협약이 그 효과적  
이행수단으로 무역규제를 사용하는  
경향과 관계가 있다.**

와 목적을 구현하기 위한 후속협상의 단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향후 그에 대한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국제환경협약은 더욱 확대될 것이며 또한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협약에 무역규제를 수반하는 경향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뿐만 아니라 각국은 자국의 환경보호를 위하여 제품과 포장에 대한 각종 기준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보호무역적 성향을 띠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각국이 자국의 법률에 의해 일방적 환경보호주의 입법의 성향을 강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이러한 일방적 조치가 GATT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고 있으나 리우선언의 정신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GATT의 원칙을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새로 시작될 환경라운드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입니다. 그러나 GATT 원칙의 변경 여부에 관계없이 확실한 것은 세계가 지구환경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러한 관심은 어떠한 형태로든 기존의 질서에 영향을 미치게 마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새롭게 다가오는 국제환경질서 속에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과연 어떤 것인가에 대하여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지구환경의 악화에 대한 선진공업국의 책임과 의무는 강조해야 하지만 OECD 가

입을 앞둔 선발개도국으로서 지구환경보호를 위한 부담 또는 회피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로서는 지구환경과파에 역사적 책임이 없음을 근거로 선진국이 보유하고 있는 환경청정기술의 이전 및 지구환경개선을 위한 재정 부담을 오염의 원인자부담원칙에 의거하여 주장하는 한편, 우리에게 주어지는 적정한 수준의 의무나 부담은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전향적 자세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정부차원에서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반영하는 국가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지구환경보호를 대외명분으로 한 선진국들의 무역규제조치에 대비하기 위하여 환경규제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할 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를 내실있게 실시하는 방안도 차질없이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현재 정부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지구환경관계장관 대책회의 및 차관급의 지구환경실무회의 그리고 국장급의 지구환경대책기획단 등 지구환경특별대책기구를 구성하여 환경, 산업, 협상대책 등 3개 분야 44개 세부대책과제로 구성된 지구환경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환경정책이 관련 부처 중복과 실무팀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형편으로 국제환경예의 대응전략 및 협상전략에 있어서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일부의 지적이 있습니다.

이는 지구환경문제가 환경문제 자체로서도 중요성을 갖지만 국제외교 및 통상정책, 국가간 기술이전, 개도국 재정지원 그리고 에너지 정책과 기술개발정책 등 굵직한 분야가 함께 내포되어 있다는 점과 더욱이 UR협상이 완료된뒤 곧바로 시작될 Green Round 협상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재정비의 필

